

附錄：環境關聯法律

1. 環境政策基本法
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3. 大氣環境保全法
4. 水質環境保全法
5. 驟音·振動規制法
6. 有害化學物質管理法
7. 環境污染被害紛爭調整法
8.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시행령

環境政策基本法

1990. 8. 1
法律 第4257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環境保全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의 責任을 명확히 하고 環境保全施策의 基本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環境污染으로 인한 危害를 預防하고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基本理念) 環境의 質的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快適한 環境의 造成 및 이를 통한 人間과 環境間의 調和와 균형의 유지는 國民의 건강과 文化的인 生活의 享有 및 國土의 보전과 항구적인 國家發展에 必須不可缺한 要素임에 비추어 國家·地方自治團體·事業者 및 國民의 環境을 보다 良好한 상태로 유지·造成하도록 노력하고, 環境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현재의 國民으로 하여금 그 惠澤을 널리享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世代에게 繼承될 수 있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第3條(定義) 이 法으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環境”이라 함은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말한다.
2. “自然環境”이라 함은 地下·地表(海洋을 포함한다) 및 地上의 모든 生物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非生物的인 것을 포함한 自然의 상태를 말한다.
3. “生活環境”이라 함은 大氣, 물, 廢棄物, 驚音, 振動, 惡臭 등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계되는 環境을 말한다.

4. “環境污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따라 발생되는 大氣污染, 水質污染, 土壤污染, 海洋污染, 放射能污染, 驚音, 振動, 惡臭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環境에被害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環境保全”이라 함은 環境污染으로부터 環境을 보호하고 汚染된 環境을 개선함과 동시에 快適한 環境의 상태를 유지·造成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第4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國家는 環境污染과 그 危害를 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하기 위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 ②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國家의 環境保全計劃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第5條(事業者의 責務) 事業者는 그 事業活動으로부터 起起되는 環境污染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 참여하고 協力하여야 할 責務를 진다.

第6條(國民의 權利와 義務)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 協力하고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7條(污染原因者の 費用負擔責任) 자기의 行위 또는 事業活動으로 인하여 環境污染의 원인을 起起한 者는 그 汚染의 방지와 汚染된 環境의 회복 및 被害救濟에 소요되는 費用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第8條(報告) ① 政府는 매년 主要 環境保全施策의 추진狀況에 관한 보고서를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年度의 環境保全施策 추진 狀況
2. 다음 年度의 主要環境保全施策의 내용
3. 기타 環境保全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9條(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의 방지등) ① 政府는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 및 그 방지등에 관하여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原子力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2章 環境保全 計劃樹立等

第1節 環境基準

第10條(環境基準의 設定) ① 政府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環境基準을 設定하여야 하며 環境與件의 變化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地域環境의 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별도의 環境基準을 設定할 수 있다.

第11條(環境基準의 유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環境에 관련되는 法令의 制定과 行政計劃의 수립 및 事業의 执行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環境惡化의豫防 및 그 要因의 제거
2. 環境汚染地域의 原狀回復
3. 새로운 科學技術의 사용으로 인한 環境危害의豫防
4. 環境污染防治을 위한 財源의 適正配分

第2節 基本的 施策

第12條(環境保全長期綜合計劃의 수립) ① 環境處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政府의 環境保全을 위한 長期綜合計劃(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을 每 10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長期計劃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第13條(長期計劃의 내용)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計劃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人口・產業・經濟・土地 및 海洋의 利用등 環境變化 與件에 관한 사항
2. 環境汚染度 및 汚染物質 排出量의豫測과 環境汚染이 生態系에 미치는 영향등 環境質의 變化展望
3. 自然環境의 現況 및 展望
4. 環境保全 目標의 設定과 이의 達成을 위한 段階別 對策 및 事業計劃
5. 事業의 施行에 소요되는 費用의 算定 및 財源調達方法

第14條(長期計劃의 施行) ① 環境處長官은 第12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長期計劃을 지체없이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長期計劃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5條(環境污染의 調査) ① 政府는 環境污染狀況을 常時 調査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第1項의 調査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環境污染의 監視・測定體制를 유지하여야 한다.

第16條(環境保全知識 및 情報의 普及) ① 政府는 環境保全에 관한 知識 및 情報를 普及하고 國民의 環境保全意識을 鼓吹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未來世代를 위하여 環境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하기 위하여 國民의 環境教育에 노력하여야 한다.

第17條(國際協力) 政府는 國際協力を 통하여 環境情報 및 기술을 交流하고 專門人力을 養成하며, 環境保全을 위한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第18條(環境科學技術의 振興) 政府는 環境保全을 위한 實驗・調查・研究・技術開發 및 專門人力의 養成등 環境科學技術의 振興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9條(環境污染防治施設의 設置・管理) 政府는 大氣污染의 低減을 위한 綠地帶, 瘦・下水 및 廢棄物의 처리를 위한 施設, 驟音・振動 및 惡臭의 방지를 위한 施設 기타 環境污染방지를 위한 公共施設의 設置・management를 위하여 필요한

92 附錄：環境關聯法律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0條(排出規制) 政府는 環境保全을 위하여 大氣污染 · 水質污染 · 土壤污染 또는 海洋污染의 원인이 되는 物質의 排出, 驚音 · 振動 · 惡臭의 発生 및 廢棄物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規制를 하여야 한다.

第21條(有害化學物質의 管理) 政府는 化學物質에 의한 環境污染과 건강상의 危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有害化學物質을 적정하게 管理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2條(特別綜合對策의 수립) ① 環境處長官은 環境의 污染 또는 自然生態系의 變化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地域을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 · 道知事와 協議하여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 · 告示하고 당해 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 수립하여 관할 市 · 道知事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내의 環境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내의 土地利用과 施設設置를 制限할 수 있다.

第23條(影響圈別 環境管理) 環境處長官은 環境污染의 狀況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氣污染의 影響圈別地域 및 水質污染의 水系別地域등에 대한 環境의 影響圈別管理를 하여야 한다.

第3節 自然環境의 보전

第24條(自然環境의 보전) 國家와 國民은 自然環境과 生態系의 보전이 人間의 生存 및 생활의 基本임에 비추어 自然의 秩序와 균형이 유지 ·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5條(自然環境保全의 基本原則) 自然環境은 다음의 基本原則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自然環境은 원래의 形態로 보전되어야 하며, 自然의 이용과 開發은 調和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自然環境은 汚染과 輜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汚染되거나 輜손된 自然環境은 원래의 形態로 회복되어야 한다.
3. 野生動・植物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種族은 보존되어야 한다.

第4節 環境影響評價

第26條(環境影響評價書의 작성등) ① 都市의 開發, 產業立地 및 工業園地의 造成, 에너지開發, 港灣建設, 道路建設, 水資源開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環境保全에 영향을 미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이하 이 節에서 “事業者”라 한다)는 事業計劃案과 그 事業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豫測 및 評價에 관한 書類(이하 “環境影響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環境處長官에게 協議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② 事業者는 당해 事業施行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住民의 의견을 收斂하여 이를 環境影響評價書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事業者는 環境影響評價書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環境影響評價의 실시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公立研究機關, 政府出捐研究機關등 環境影響評價能力이 있다고 環境處長官이 지정・告示하는 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 ④ 環境影響評價의 범위・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7條(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① 環境處長官은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環境影響評價書를 檢討한 후, 그 事業이 環境保全에 지장을招來할 위험이 있어 事業計劃의調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事業者 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事業計劃의調整 및 補完등 필요한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環境處長官은 環境影響評價書를 檢討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事業者에 대하여 관련 資料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요청을 받은 者는 이에

94 附錄：環境關聯法律

상용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28條(環境影響評價의 事後管理) ① 環境處長官은 第26條 第1項 또는 第2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書에 대한 協議內容의 이행여부를 調查·확인하여야 한다.
-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查·확인결과 事業者가 環境影響評價書에 대한 協議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是正을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查·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 5 節 紛爭調整 및 被害救濟

- 第29條(紛爭調整) 政府는 環境污染으로 인한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 그 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解決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第30條(被害救濟) 政府는 環境污染으로 인한 被害를 원활히 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第31條(環境污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 事業場등에서 발생되는 環境污染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事業者는 그 被害를賠償하여야 한다.
- ② 事業場등이 2個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事業場등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事業者는 連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第 3 章 法制 및 財政上의 措置

- 第32條(法制上의 措置等)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策의 실시에 필요한 法制上·財政上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33條(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지원할 수 있다.

第34條(事業者에 대한 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행하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稅制上의 措置 기타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第35條(調查·研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련되는 學術調查·研究 및 技術開發에 필요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第 4 章 環境保全委員會, 環境保全諮詢委員會, 環境保全協會

第36條(環境保全委員會) ①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計劃 및 環境保全에 관한 政府의 主要施策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環境保全委員會를 둔다.

② 環境保全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7條(環境保全諮詢委員會) ① 環境保全에 관한 技術的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環境處長官 所屬下에 中央環境保全諮詢委員會를 市·道知事 所屬下에 地方環境保全諮詢委員會를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諮詢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8條(環境保全協會) ① 環境保全에 관한 調査研究, 技術開發 및 教育·弘報등을 하기 위하여 環境保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環境污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는 會費·事業收入金 등으로 充當하며, 國家는 소요經費의 일부를 豊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96 附錄：環境關聯法律

- ⑤ 環境處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기타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이나 任員의 改任을 命할 수 있다.
- ⑥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補　　則

第39條(環境監視員) ①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등에 대한 監視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環境處와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에 環境監視員을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監視員의 任免, 職務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0條(環境技術監理團) ①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 및 그 汚染物質의 처리를 위한 施設의 設置에 대한 技術檢討를 하기 위하여 環境處長官 所屬下에 環境技術監理團을 둔다.

② 環境技術監理團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1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 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廢止法律) 環境保全法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環境保全法 第9條의2, 第69條 第1號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에 관한 사항 및 環境保全法 第43條 내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費用負擔에 관한 사항은 계속 그 効力を 가진다.

第3條(환경影響評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5條, 第5條의2 또는 第5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書類의 작성 및 協議, 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및 의견제시, 環境影響評價代行者의 지정은 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第4條(特別對策地域 지정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7條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特別對策地域의 지정과 特別綜合對策의 수립·施行 및 그에 따른 土地利用과 施設設置 제한은 第22條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第5條(環境保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協會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協會로 본다.

第6條(환경기술監理團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4의 規定에 의한 環境기술監理團은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기술監理團으로 본다.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해당 법령에 가제정리 하였음)

第8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1991. 2. 2
대통령령 제13303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환경기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 3 조(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서울특별시
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에 관련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법 제11조 각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사업규모 및 협
의시기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 4 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환경처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를 거쳐 3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계획이 경제·사회적
여건에 맞도록 매년 중기계획에 대한 연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동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중기계획에 의한 연도별 투자실적 및 환경시책
추진상황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환경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계획·연동계획 및 그

추진실적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은 중기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 조(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①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 6 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등) ① 환경처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로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영향권별 환경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영향권별 환경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환경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관리대책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2. 공항의 건설
 3. 하천의 이용 및 개발
 4. 매립 및 개간사업
 5. 관광단지의 개발
 6. 체육시설의 설치
 7. 산지의 개발
 8. 특정지역의 개발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 ② 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협의요청시기 및 경유기관은 별표2와 같다.
- ③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처장관에게 협의 요청할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경유기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주민의견의 수렴) ① 별표2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자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현황의 조사내용
 3.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다음 각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처장관
 2. 대상사업의 시행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상사업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

4.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

③ 제2항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업개요·공람장소 및 공람기간등을 2개이상의 지방일간지에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20일이상 지역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사업의 시행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환경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④ 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역주민등은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등의 의견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사업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 9 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지정등) ① 환경처장관은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환경관계연구소
4.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환경관계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
5. 기타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②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대상사업특성에 따른 사업유형별로 필요한 인력 및 적정한 장비등 지정요건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소속 기술요원에 대하여 환경처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④ 환경처장관은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0조(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등)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2.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4. 제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관계 행정기관의 장등이 제출한 의견
 5. 사업종료후의 환경오염방지대책등에 관한 사항
- ②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사항·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 및 시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부분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의 통보등) ① 환경처장관은 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사업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8조 제2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협의) ① 사업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외의 사항에 한한다.

② 사업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환경처장관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토지면적이 당초 사업계획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건축물에 대하여는 전체시설물 연면적의 100분의 5이상)
2.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길이가 당초사업계획의 100분의 10이상 증가되는 경우(도로건설등 길이를 기준으로 하는 대상사업에 한 한다)

제13조(사업착공등의 신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처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신고등과 병행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협의내용 미이행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환경처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한 결과 협의내용을 이행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처장관과의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 환경처장관은 사업자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사업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일시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처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기본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처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중앙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중앙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자연환경분과위원회
2. 대기분과위원회
3. 수질분과위원회
4. 소음·진동분과위원회
5. 폐기물처리분과위원회
6. 자동차공해대책분과위원회

7. 비용부담분과위원회
8.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
9. 토양분과위원회
10. 환경보건분과위원회
11. 화학물질분과위원회
12. 측정분석분과위원회

-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30인이내로, 자동차공해대책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분과위원 20인이내로, 환경영향평가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분야별 분과위원 각 14인이내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부처의 공무원중에서 환경처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처장관이 정한다.

제20조(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환경처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간사와 서기) ① 중앙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 ② 간사와 서기는 환경처장관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22조(수당등) 중앙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분과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6 附錄：環境關聯法律

제23조(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4조(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시·도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38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26조(사업계획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사업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감시원)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원은 환경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1.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의 기술자격취득자
2. 교육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공계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에서 이공계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환경감시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환경처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월이상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소정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5. 1년이상 환경보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환경감시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오염물질을 배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의 감시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의 원인 및 그 영향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자연환경의 조사 및 자연훼손행위의 감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사항

제29조(환경기술감리단의 구성)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감리단(이하 "감리단"이라 한다)은 산업기술분야별로 각각 7인이내의 기술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은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중에서 환경처장의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0조(감리단의 업무) 감리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그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르는 기술검토
2.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그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지도
3. 환경오염방지기술의 연구개발등

제31조(수당등) 기술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규정) ①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감리단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108 附錄：環境關聯法律

세부사항은 환경처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33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조사·확인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등의 신고의 수리

제34조(보고) 지방환경청장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 칙

제 1 조(시행일) 이 시행령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그 외의 사업자로서 별표2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 3 조(폐지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및 통령령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7조 그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의 고시일부터 3월이내에 필요한 인력 및 적정한 장비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5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 제4항중 “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③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 6 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大氣環境保全法

1990. 8. 1
法律 第4262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大氣污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上의 危害를 預防하고 大氣環境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質적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大氣污染物質”이라 함은 大氣污染의 원인이 되는 가스·粒子狀物質 또는 惡臭物質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物質의 燃燒·合成·分解時에 발생하거나 生理的 性質에 의하여 발생하는 氣體狀物質을 말한다.
3. “粒子狀物質”이라 함은 물질의 破碎·選別·堆積·移積 기타 技術的 처리 또는 燃燒·合成·分解時에 발생하는 固體狀 또는 液體狀의 微細한 物質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大氣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5. “煤煙”이라 함은 燃燒時에 발생하는 遊離炭素를 주로 하는 微細한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燃燒時에 발생하는 遊離炭素가 擬結하여 粒子의 지름이 1미크론이상이 되는 粒子狀物質을 말한다.
7. “惡臭”라 함은 黄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刺激性 있는 氣體狀

物質이 사람의 嗅覺을 刺戟하여 不快感과 嫌惡感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8. “特定大氣有害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財產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大氣污染物質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大氣污染物質排出施設”이라 함은 大氣污染物質을 大氣에 排出하는 施設物·機械·器具 기타 物體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大氣污染防止施設”이라 함은 大氣污染物質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大氣污染物質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 第1號에 規定된 自動車와 重機管理法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의한 重機중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添加劑”라 함은 炭素와 水素만으로 구성된 物質을 제외한 化學物質로서 自動車의 燃料에 少量을 添加함으로써 自動車의 性能을 向上시키거나 自動車 排出物質을 低減시키는 化學物質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常時測定) ① 環境處長官은 全國의 大氣污染의 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测定網을 設置하고 大氣污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②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안의 大氣污染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测定網을 設置하고 大氣污染度를 测定할 수 있다.

第4條(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告示) ① 環境處長官은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测定網의 位置·區域등을 명시한 测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閲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은 第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が 测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5條(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测定網設置計劃에 따라 测定網 設置에 필요한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物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節次·損失補償등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6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告示한 때에는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設置計劃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告示전에 당해 道路管理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7條(大氣污染公定試驗方法) 環境處長官은 汚染物質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大氣污染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2章 事業場의 大氣污染物質 排出規制

第8條(排出許容基準) ① 大氣污染物質排出施設(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에서排出되는 大氣污染物質(이하 “汚染物質”이라 한다)의 排出許容基準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總理令으로 정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이하 “特別對策地域”이라 한다)안의 大氣污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地域안에 設置된 排出施設에 대하여 第1項의 基準보다 嚴格한 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地域안에 새로이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 特別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第9條(總量規制) ① 環境處長官은 大氣污染狀態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하 “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住民의 健康·財產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區域 또는 特別對策地域中 事業場에 대하여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規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項目·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
令으로 정한다.

第10條(排出施設의 設置許可등) ①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로 인하여 環境基準의 維持가
곤란하거나 住民의 健康·財產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第11條(防止施設의 設置등) ①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許可를 받은 者
(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變更할 때에는 그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大氣污染防治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環境處長官이 環境政策基本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그 排出施設의 機能 및 工程上 汚染物質이 排出許容基
準이하로 排出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防止施設의 設置의 方法으로 汚染物質의 適正處理가 可能하다고
總理令으로 定하는 경우

② 環境處長官은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特定大氣有害物質이 排出許容
基準이하로 排出될 수 있는 경우에도 環境上의 危害程度를 고려하여 總
理令으로 정하는 地域·施設 및 規模에 해당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防止施設을 設置하게 할 수 있다.

第12條(防止施設의 設計·施工) 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是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가 設計·

施工하여야 한다. 다만, 總理令이 정하는 防止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및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事業者 스스로 防止施設을 設計·施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3條(共同防止施設의 設置承認등)** ① 工業團地 기타 事業場이 密集된 地域의 事業者は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共同處理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は 事業場별로 해당 汚染物質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 ② 事業者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承認을 얻어야 한다.
- ③ 共同防止施設에 있어서의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과 다른 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그 排出許容基準 및 共同防止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 第14條(排出施設등 設置完了의 申告)** ① 事業者は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日 이내에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고 지정한 期日내에 檢查를 받아야 한다.
- ③ 事業者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結果 적합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施設을 이용하여 操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15條(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正常運營)** ① 事業者は 操業을 할 때에는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 또는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도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正常運營하여야 한다.
- ② 事業者は 操業을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運營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記錄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環境處長官은 事業者에 대하여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正常運營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器機의 附着등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措置를 命할 수 있다.
- ④ 事業者は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부득이한 사유로 正常運營할 수 없어

第8條 또는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排出하게 될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6條(改善命令) 環境處長官은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아操業중인 排出施設에서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 또는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期間을 정하여 事業者에게 당해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措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命할 수 있다.

第17條(操業停止命令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改善命令를 받은者が改善命令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期間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檢查結果 第8條 또는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大氣污染으로 인한 住民의 健康上의 危害와 環境上의 被害가 急迫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제한·操業停止 기타 필요한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18條(施設의 移轉命令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改善命令를 하여도 당해 事業場의 位置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住民의 健康上의 危害와 周邊環境上의 被害防止를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그 事業場의 移轉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을 移轉하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19條(排出賦課金) ① 環境處長官은 第8條 또는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여排出되는 汚染物質로 인한 大氣環境上의 被害를 방지하고排出許容基準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여排出污染物質을排出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污染物質의 종류·排出期間·排出量등을 算定基準으로 하는排出賦課金을 납부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은 環境管理公團法에 의한 環境污染防治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 ③ 環境處長官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그 管轄區域안의 排出賦課金 徵收에 관한 權限을 委任한 경우에는 徵收된 排出賦課金中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 ④ 環境處長官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는 排出賦課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所定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20條(許可의 取消등) 環境處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操業을 정지시키거나 그 排出施設에 대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2.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때

第21條(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10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排出施設의 사용금지 또는 閉鎖를 命하여야 한다.

-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閉鎖命令를 받고 이 행하지 아니한 事業場에 대하여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氣·水道의 設置나 供給을 중단하도록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2條(自家測定) ① 事業者가 그 排出施設을 운영할 때에는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自家測定하거나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者로 하여금 測定하게 하고 그 結果를 事實대로 記錄하고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測定의 대상·방법 기타 測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23條(測定代行者の 지정) ① 汚染物質의 自家測定業務를 代行하고자 하는 者(이하 “測定代行者”라 한다)는 總理令이 정하는 技術能力·시설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處長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은 約定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 測定代行業務의 적정성, 排出施設의 地域的 分布 및 測定代行業務의 需要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재한을 할 수 있다.
- (3) 測定代行者は 測定의 結果를 事實대로 記錄하고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4) 測定代行者の 遵守事項·測定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 (5) 測定代行者の 缺格事由 및 그 지정의 取消등에 관하여는 第45條 및 第4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4條(排出施設管理人) (1) 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의 運營·管理를 위하여 排出施設管理人을 任命하고, 이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排出施設管理人을 改任한 때에도 또한 같다.

- (2) 排出施設管理人은 그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당해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이 正常의 으로 運營되도록 管理하여야 한다.
- (3) 事業者는 排出施設管理人이 그 遵守事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등 排出施設管理人的 管理事項을 監督하여야 한다.
- (4) 事業者 및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의 運營·management를 위한 排出施設管理人的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5)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管理人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및 排出施設管理人的 資格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그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25條(排出施設管理人の 變更命令) 環境處長官은 排出施設管理인이 이·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事業者에 대하여 排出施設管理人の 變更을 명할 수 있다.

第3章 生活環境上의 大氣汚染物質排出規制

第26條(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의 黃含有基準) ① 環境處長官은 燃料用 油類 및 기타 燃料에 대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그 종류별로 黃의 含有許容基準(이하 “黃含有基準”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黃含有基準이 정하여진 燃料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供給地域과 使用施設의 범위를 정하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地域別 또는 使用施設別로 필요한 燃料의 供給을 요청할 수 있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供給地域과 시설에 黃含有基準을 초과하는 燃料를 供給·販賣하거나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燃料의 供給·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27條(燃料의 製造· 사용등의 規制) 環境處長官은 燃料의 사용으로 인한 大氣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燃料의 製造·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28條(飛散먼지의 規制) ① 일정한 排出口 없이 大氣중에 직접 排出되는 먼지(이하 “飛散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고 飛散먼지의 발생을 抑制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飛散먼지의 發生抑制를 위한 施設의 設置 또는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施設이나 措置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事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施設의 設置나 措置의 이행 또는 개선을 命할 수 있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

하여는 당해 事業의 중지 또는 施設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命할 수 있다.

第29條(惡臭發生物質의 燒却禁止) 總理令이 정하는 地域안에서 고무·피혁·合成樹脂 또는 廉油등 惡臭가 發生하는 物質을 燒却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적합한 燒却施設에서 이를 燒却하여야 한다.

第30條(生活惡臭의 抑制) ① 市·道知事는 住民의 住居生活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第2條 第9號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이 아닌 施設등으로부터 발생하는 惡臭의 規制를 위하여 그 所有者·管理者등에 대하여 필요한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對象施設·規制內容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4章 自動車 排出ガス의 規制

第31條(製作車의 排出許容基準) 自動車 製作(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製作되는 自動車(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하 “排出ガス”라 한다)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作車 排出ガ스 許容基準(이하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製作하여야 한다.

第32條(製作車에 대한 認證) ① 製作車의 排出ガス가 製作車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게 排出되어야 하는 最少期間(이하 “排出ガ스保證期間”이라 한다)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② 自動車製作者는 製作하고자 하는 自動車에 대하여 環境處長官으로부터 第1項의 排出ガ스保證期間내에는 그 自動車排出ガ스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게排出된다는 認證을 받아 製作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處長官은 總理令이 정하는 自動車에 대하여는 認證을 免除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③ 自動車製作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받은 自動車에 대하여 그

120 附錄：環境關聯法律

認證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認證을 받아야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신청 · 認證의 방법 및 認證의 免除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33條(製作車排出許容基準検査 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아 製作한 自動車의 排出가스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지정하는 自動車關係研究機關에 위탁할 수 있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製作者の 設備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場所에서 檢査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은 自動車製作者の 부담으로 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關係研究機關이 檢査를 실시하는 경우의 檢査手數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34條(缺陷是正) ① 環境處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그 自動車 排出가스가 保證期間내에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가 自動車製作者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車種에 대하여 缺陷是正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을 받은 自動車製作者は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自動車에 대한 缺陷是正計劃을 제출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缺陷是正計劃에 따라 缺陷을 是正하고 그 結果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結果를 보고받아 檢討한 結果 缺陷是正計劃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缺陷是正命令을 받은 者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다시 缺陷是正을 命하여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의 對象이 되는 車種의 範圍決定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5條(認證의 取消) 環境處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1. 하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경우
2. 製作車에 중대한 缺陷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製作車排出許容基準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第34條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36條(運行車排出許容基準)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이하 “自動車運行者”라 한다)는 그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排出가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運行車排出가스許容基準(이하 “運行車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運行하여야 한다.

第37條(運行車의 隨時點檢) ① 環境處長官은 運行車의 排出가스가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道路 또는 駐車場등에서 運行車에 대한 點檢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自動車運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不應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38條(運行車의 改善命令) ① 環境處長官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에 대한 點檢結果 그 排出가스가 運行車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의 運行者 또는 所有者에 대하여 개선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10口이내의 범위내에서 개선에 필요한 期間동안 당해 自動車의 使用停止를 함께 命할 수 있다.

- ② 環境處長官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에 대한 點檢結果 輕油를 燃料로 사용하는 自動車의 排出가스가 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대한 超過率이 높고 그 사유가 自動車 排出가스 관련 부분의 老朽化등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車種에 해당하는 自動車의 所有者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期間을 정하여 그 使用燃料의 일부를 代替하거나 自動車排出 가스를 減少시키는 裝置를 附着 또는 交替하는등 필요한改善을 命할 수 있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改善命令를 받은 者는 環境處長官이 지정하는 者로부터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改善結果를 확인받은 후環境處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39條(検査用器機의 形式承認 등) ① 自動車排出ガス의 檢查 또는 點檢에 사용하는 機械·器具(이하 “検査用器機”라 한다)를 製作(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處長官의 形式承認을 받아야 한다. 形式承認을 받은 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规定에 의한 形式承認을 받은 檢査用器機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處長官의 精度検査를 받아야 한다.

③ 第1項의 规定에 의한 形式承認을 받은 檢査用器機에 사용하는 較正用標準紙등(이하 “較正用品”이라 한다)을 供給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較正用品에 대하여 環境處長官의 檢定 또는 較正検査를 받아야 한다.

④ 環境處長官은 第2項 및 第3項의 规定에 의한 檢査業務를 檢查能力이 있다고 인정하는 者에 委託할 수 있다.

⑤ 檢査用器機의 形式承認·精度検査·較正用品의 檢定 또는 較正検査의 내용·節次·基準·대상 및 手數料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40條(検査代行者の 지정) ① 第38條 第3項의 规定에 의한 運行車의 改善結果確認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者 또는 第39條 第4項의 规定에 의하여 檢査用器機에 대한 檢査業務를 委託받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등을 갖추어 環境處長官으로부터 檢査代行者の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지정을 함께 있어 檢査代行業務의 適正性 및 需要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③ 檢査代行者は 檢査의 결과를 사실대로 記錄하고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檢查代行者の 缺格事由 및 그 지정의 取消등에 관하여는 第44條 및 第4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1條(自動車 燃料 또는 添加劑의 規制) ① 自動車에 사용하는 燃料 또는 添加劑를 製造(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하게 製造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燃料 또는 添加劑로 인하여 環境上의 危害가 발생하거나 人體에 顯著하게 有害한 物質이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燃料 또는 添加劑의 製造·販賣 또는 사용을 規制할 수 있다.

第42條(添加劑의 登錄) ① 總理令이 정하는 添加劑를 製造하고자 하는 者 또는 添加劑를 사용하여 燃料를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處長官에게 당해 添加劑에 대한 有害性 審査를 받아 이를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 審査·登錄의 節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43條(登錄의 取消) 環境處長官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添加劑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登錄 당시는 有害성이 판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새로운 研究結果 또는 機構使用으로 인하여 有害성이 확인된 경우

第 5 章 防止施設業

第44條(防止施設業의 登錄)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위한 營業(이하 “防止施設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金·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第45條(缺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產者, 限定治產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驚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懲役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46條(登錄의 取消등)** 環境處長官은 防止施設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5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の 任員중 第45條 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工事を 一括하여 下都給한 경우
 4. 1년에 2回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後 1년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繼續하여 1年以上 營業實績이 없는 경우
 7.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47條(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防止施設業者の 繼續工事) ①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者는 그 處分전에 締結한 都給契約에 한하여 그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은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工監理者를 지정하여 工事を 管理·監督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계속하는 者는 당해

設計 또는 施工을 완료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防止施設業者로 본다.

第6章 補 則

第48條(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教育) 防止施設業 · 自家測定代行業務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排出施設管理人을 履傭한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者에 대하여 環境處長官이 실시하는 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第49條(보고 및 檢查等)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 · 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필요한 報告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출입하여 關係書類나 施設 · 裝備등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1.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設置許可를 받은 者
 2.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代行者의 지정을 받은 者 ·
 3.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黃含有基準이 정하여진 油類를 供給 · 販賣 또는 사용하는 者
 4.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燃料의 製造 · 販賣 또는 사용금지 대상인 者
 5. 第3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活惡臭의 規制對象인 者
 6.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製作者 또는 第3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作車排出許容基準検査를 委託받은 者
 7.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檢查用器機의 製作者등
 8. 第4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代行者
 9. 第4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添加劑의 登錄을 한 者
 10.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
 11. 第5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 · 檢查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内보여야 한다.

第50條(關係機關의 協調) 環境處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126 附錄：環境關聯法律

市·道知事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煙房器機의 改善
2. 自動車 엔진의 變更 또는 代替
3. 自動車의 車齡制限
4. 自動車의 通行制限
5.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第51條(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52條(聽聞)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와 大氣環境保全에 큰 危害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 등
2.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 또는 許可取消
4. 第26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供給·販賣 또는 사용의 금지·制限 또는 必要措置命令
5.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製造·販賣 또는 사용의 금지·제한 또는 必要措置命令
6. 第28條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중지·施設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命令
7. 第3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必要措置命令
8. 第34條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
9.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取消
10. 第3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 排出가스 減少 措置命令 등

11. 第4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第23條 第5項 및 第40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處分

第53條(手數料)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등을 받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變更許可
2.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檢查
3.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者的 지정 및 變更指定
4.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및 變更登錄

第54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7章 罰則

第55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한 者
2.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結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操業한 者
3.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者
4.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등을 위반한 者
5.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을 위반한 者
6.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 또는 許可取消를 받고도 그 排出施設을

運營한 者

7. 第31條의 规定에 위반하여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自動車를 製作한 者
8. 第32條 第2項의 规定에 위반하여 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自動車를 製作한 者
9. 第34條 第1項 또는 第3項의 规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第56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3條 第1項의 规定에 의한 測定代行者的 지정 또는 變更指定을 받지 아니하고 測定業務를 代行한 者
2. 第39條 第1項의 规定에 의한 形式承認 또는 그 變更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檢查用器機를 製作한 者
3. 第41條 第1項의 规定에 위반하여 燃料 또는 添加劑를 製造한 者
4. 第41條 第2項의規定에 의한 規制에 위반하여 燃料 또는 添加劑를 製造하거나 販賣한 者
5. 第42條 第1項의 规定에 위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添加劑 또는 添加劑를 사용한 燃料를 製造한 者
6. 第44條의 规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設計 또는 施工을 한 者

第57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2條 第1項의 规定에 의한 測定을 하지 아니한 者
2. 第24條 第1項의 规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한 者
3. 第26條 第3項 또는 第27條의 规定에 의한 燃料使用制限措置등의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28條 第3項의 规定에 의한 飛散먼지 發生施設등에 대한 사용제한등의 命令에 위반한 者

5. 第2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惡臭發生物質을 燒却한 者
6.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自動車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여 自動車를 運行한 者
7.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點檢을 不應하거나 방해한 者
8. 第3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고 이에 不應한 者
9. 第4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出入・検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58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3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하거나 變更한 者
2. 第15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排出施設등의 運營狀況에 관한 記錄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虛偽記錄한 者
3. 第15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器機附着등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15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아니한 者
5. 第22條 第1項・第23條 第3項 또는 第40條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測定結果 또는 檢查結果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虛偽記錄한 者
6. 第24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の 業務를 방해하거나 排出施設管理人の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者
7. 第2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飛散먼지發生抑制施設設置등의 命令에 위반한 者
8. 第39條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59條(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完了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の 任命 또는 改任에 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24條 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の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5.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の 變更命令을 위반한 者
 6. 第2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7.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惡臭 規制措置命令에 위반한 者
 8. 第3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고 이에 不應한 者
 9. 第38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10. 第48條의 規定을 위반하여 排出施設管理人 등의 教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11. 第4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한 者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處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處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60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者 기타의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5條 내지 第58條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大氣污染公定試驗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3의 规定에 의하여 公告된 環境汚染公定試驗方法은 第7條의 规定에 의하여 告示된 大氣污染公定試驗方法으로 본다.

第3條(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은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4條 또는 第15條의3 第2項의 规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 또는 第13條 第3項의 规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으로 본다.

第4條(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許可를 받은 者는 第10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规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 第1項 本文 또는 第15條의3 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設置된 防止施設 또는 共同防止施設은 第11條 第1項 本文, 第13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 第12項 但書의 规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은 第11條 第1項 但書의 规定에 의하여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6條의 规定에 의하여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使用開始 申告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者는 第14條의 规定에 의한 設置完了申告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7條 내지 第19條, 第20條 또는 第21條의 规定에 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에 대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者는 第16條 내지 第18條·第20條 또는 第21條의 规定에 의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排出施設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3條 또는 第23조의2의 规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的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은 第24條 第1項 또는 第25條의 规定에 의한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으로 본다.

第6條(排出賦課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9條의2

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賦課金의 納付命令·納入 및 滯納處分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納付命令·納入 및 滯納處分으로 본다.

第7條(自家測定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으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代行者의 지정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代行者의 지정으로 본다.

第8條(製作自動車의 認證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3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가스 濃度基準에 적합하게 製作 또는 輸入된 自動車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게 製作 또는 輸入된 自動車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30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作하거나 輸入된 自動車의 標本에 대하여 排出가스濃度基準에의 적합성에 관한 試驗檢查結果를 環境廳長 또는 環境處長官에게 제출하거나 그 確認檢查를 받은 者는 第32條 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의 申請을 하거나 認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30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是正命令은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缺陷是正命令으로 본다.

第9條(運行車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種類別 排出許容基準은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排出許容基準으로 본다.

第10條(自動車検査用器機의 形式承認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0條의3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 排出가스 檢查用器機의 形式承認·確認檢查 또는 精度檢查를 받은 것은 第39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形式承認 또는 精度檢查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精度檢查를 위한 較正用品에 대한 檢定 또는 較正檢查를 받은 것은 第39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檢定 또는 較正檢查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1條(検査代行者の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0條의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検査 및 精度検査를 위하여 檢查業務를 代行하고 있는 者는 第4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查代行者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12條(自動車 燃料添加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3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添加劑의 有害性에 관한 審査를 받은 것은 第4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第4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13條(防止施設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7條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者 또는 登錄이 取消된 者는 第44條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거나 또는 登錄이 取消된 것으로 본다.

第14條(排出施設管理人の 教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등 技術要員에 대한 教育은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教育으로 본다.

第15條(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은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 당시 聽聞節次가 進行중에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그 종료 시까지의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聽聞을 행한다.

第16條(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條件附許可·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17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8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그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水質環境保全法

1990. 8. 1.
法律 第4260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水質污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河川·湖沼등 公共水域의 水質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健康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廢水”라 함은 물에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水質污染物質이 混入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水質污染物質”이라 함은 水質污染의 要因이 되는 物質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特定水質有害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健康, 財產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水質污染物質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公共水域”이라 함은 河川·湖沼·港灣·沿岸海域 기타 公公用에 사용되는 水域과 이에 接續하여 公公用에 사용되는 總理令으로 정하는 水路를 말한다.
5. “廢水排出施設”이라 함은 水質污染物質을 公共水域에 排出하는 施設物·機械·器具 기타 物體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海洋污染防止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 및 海洋施設을 제외한다.
6. “水質污染防治施設”이라 함은 廢水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水質污染物

質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常時測定) ① 環境處長官은 全國의인 水質汚染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测定網을 設置하고 水質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② 서울特別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 안의 水質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测定網을 設置하고 水質汚染度를 测定할 수 있다.

第4條(測定網 設置計劃의 決定·告示) ① 環境處長官은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测定網의 位置·범위 및 區域등을 명시한 测定網 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閲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은 第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が 测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5條(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测定網 設置計劃에 따라 测定網 設置에 필요한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上에 定着된 물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節次·損失補償등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6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测定網 設置計劃을 決定·告示한 때에는 다음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河川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의 許可
 2.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3.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用 또는 사용의 許可
- ②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测定網 設置計劃에 第1項 각號에 해당하는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告示전에 당해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7條(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 環境處長官은 水質汚染物質(이하 “污染物質”이라

한다)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水質污染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2章 瘦水의 排出規制

第8條(排出許容基準) ① 廢水排出施設(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에서排出되는污染物質의排出許容基準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들어 總理令으로 정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對策地域(이하 “特別對策地域”이라 한다)안의 水質污染防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地域안에 設置된 排出施設에 대하여 第1項의 基準보다 嚴格한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地域안에 새로이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 特別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第9條(總量規制) ① 環境處長官은 水質污染狀態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하 “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住民의 健康, 財產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區域 또는 特別對策地域중 事業場이 密集되어 있는 區域의 경우에는 당해 區域안의 事業場에 대하여排出되는 污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項目·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10條(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등) ①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總理令이 정하는排出施設의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하며,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그 申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로 인하여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住民의 健康, 財產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許可를 제한할 수 있다.

第11條(防止施設의 設置등) ①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許可를 받은 者 (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變更할 때에는 그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 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水質污染防治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環境處長官이 環境政策基本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그 排出施設의 機能 및 工程上 汚染物質이 排出許容基準이하로 排出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水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廢水處理能力이 있다고 인정·告示하는 關係 專門機關에 總理令이 정하는 廢水를 委託處理하는 경우

3. 기타 防止施設의 設置의 방법으로 汚染物質의 適正處理가 가능하다고 總理令으로 정하는 경우

- ② 第10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여야 하는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汚染物質의 排出를 抑制하기 위한 施設의 設置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2條(防止施設의 設計·施工) 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是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가 設計·施工하여야 한다. 다만, 總理令이 정하는 防止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및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承認을 얻어 事業者 스스로 防止施設을 設計·施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3條(共同防止施設의 設置承認등) ① 工業團地 기타 事業場이 密集된 地域의

138 附錄：環境關聯法律

事業者は 環境處長官의 承認을 얻어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의共同處理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は 事業場別로 해당 汚染物質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2) 事業者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얻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承認을 얻어야 한다.

(3) 共同防止施設에 있어서의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과 다른 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그 排出許容基準 및 共同防止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14條(設置完了의 申告) ① 事業者は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에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고 지정한 期日내에 檢查를 받아야 한다.

② 事業者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結果 적합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施設을 이용하여 操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5條(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正常運營) ① 事業者は 操業을 할 때에는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 또는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도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正常運營 하여야 한다.

② 事業者は 操業을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에 관한 狀況을 사실대로 記錄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事業者에 대하여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正常運營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器機의 附着 등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④ 事業者は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부득이한 사유로 正常運營할 수 없어 第8條 또는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排出하게 될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6條(改善命令) ① 環境處長官은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아 操業중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 또는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期間을 정하여事業者에게 당해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措置(이하“改善命令”이라 한다)를 命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0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排出施設이 第1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物質의 排出을 抑制하기 위한 施設이나 措置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期間을 정하여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第17條(操業停止命令 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改善命令을 받은者が改善命令을 이해하지 아니하거나期間내에 이행을 하였으나 檢查結果가 第8條 또는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水質污染으로 인한健康上의危害와環境上의被害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排出施設에 대하여操業時間의 제한,操業停止,기타 필요한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18條(施設의 移轉命令 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改善命令을 하여도 당해事業場의 位置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住民의健康上의危害와周邊環境上의被害防止를 위하여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期間을 정하여 그事業場의 移轉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事業場을 移轉하는 者에 대하여는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19條(排出賦課金) ① 環境處長官은 第8條 또는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여排出되는污染物質로 인한水質環境上의被害를 방지하고排出許容基準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여污染物質을 사실상排出하는事業者에 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污染物質의 종류,排出期間,排出量 등을 算定基準으로 하는排出賦課金을 납부할 것을 命하여야 한다. 第10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 또는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排出施設을 設置 또는變更한 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은 環境管理工團法에 의한 環境污染防治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 (3) 環境處長官은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그 管轄區域안의 排出賦課金 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 (4) 環境處長官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는 排出賦課金을 納入하여야 할 著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20條(許可의 取消等) (1) 環境處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操業을 정지시키거나 그 排出施設에 대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2.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때
- (2) 環境處長官은 第10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著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操業을 정지시키거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第21條(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 등) (1) 環境處長官은 第10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10條 第1項 但書 또는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한 著에 대하여는 당해 排出施設의 사용금지 또는 閉鎖를 命하여야 한다.

(2)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閉鎖命令을 받고 이 행하지 아니한 事業場에 대하여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氣·水道의 設置나 供給을 중단하도록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2條(自家測定) (1) 事業者가 그 排出施設을 운영할 때에는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自家測定하거나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者로 하여금 測定하게 하고 그 結果를 사실대로 記錄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2) 測定의 대상·項目·방법 기타 測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23條(排出施設管理人) ① 事業者は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의 운영·管理를 위하여 排出施設管理人을 任命하고, 이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排出施設管理人을 改任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排出施設管理人은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당해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이 正常으로 운영되도록 管理하여야 한다.

③ 事業者は 排出施設管理人이 그 준수사항을 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排出施設管理人的 管理事項을 監督하여야 한다.

④ 事業者 및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의 운영·management를 위한 排出施設管理人的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排出施設管理人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및 排出施設管理人的 資格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그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24條(排出施設管理人の 變更命令) 環境處長官은 排出施設管理인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事業者에 대하여 排出施設管理人の 變更을 命할 수 있다.

第3章 廢水終末處理施設

第25條(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水質汚染이 深化되어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水質保全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안의 각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共同으로 처리하여 公共水域에 排出하게 하기 위하여 廢水終末處理施設(이하 “終末處理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 기타 水質汚染의 원인을 직접 起起한 者는 따로 法律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의 設置·運營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終末處理施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 ①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終末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을 작성하여 環境處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基本計劃을 작성하거나 承認한 때에는 終末處理施設에서 廢水를 처리할 수 있는 地域(이하 “共同處理區域”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處理區域을 지정하여 告示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設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27條(排水設備의 設置 및 管理) ① 第2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共同處理區域안에 排出施設을 設置하고 자 하는 者 및 廢水를 排出하고자 하는 者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는 당해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廢水量 終末處理施設에 流入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排水管線등 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水設備를 設置한 事業者는 終末處理施設이 처리하는 汚染物質에 대하여는 第1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해당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여야 할 排水設備의 設置方法 · 構造基準등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서 이에 관하여 規定한 경우에는 그 規定에 의한다.

第4章 公共水域의 水質保全

第28條(水質污染의 水系別 影響圈域의 設定) 環境處長官은 水質污染의 狀況을 파악하고 그 적절한 防止對策을 수립하기 위하여 水質污染의 水系別 影響圈域을 設定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29條(投棄등 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公共水域 또는 山林에 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 産業廢棄物을 버리는 행위
 2. 公共水域에 糞尿, 動物의 死體, 쓰레기 또는 汚泥를 버리는 행위
 3. 公共水域에서 自動車를 洗車하는 행위
-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 各號의 行爲로 인하여 公共水域 또는 山林이 污染되거나 污染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行爲者에게 해당 物質의 제거를 命하여야 한다. 다만, 行爲者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物質이 排出되어 있는 곳의 占有者, 管理者 또는 所有者에게 제거를 命할 수 있다.

第30條(公共水域의 占用 및 埋立등에 의한 水質汚染防止) ① 公共水域에 대한 占用 또는 埋立을 許可 또는 認可하고자 하는 行政機關은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의 내용, 水質汚染防止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1條(洗劑의 사용으로 인한 水質汚染防止) 環境處長官은 洗劑의 사용으로 인한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洗劑의 대체 기타 洗劑의 製造·販賣에 대한 제한 및 洗劑의 과다사용에 대한 警告文句의 표시등을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2條(公共施設의 整備指示) 環境處長官은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道知事로 하여금 管轄區域안의 下水道, 廢水 또는 下水處理施設, 廢棄物處理施設등의 設置·整備등을 하게 할 수 있다.

第5章 特定湖沼의 水質保全

第33條(特定湖沼의 水質保全) ① 環境處長官은 水質汚染이 深化되어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湖沼를 特定湖沼로

지정하고, 特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당해 特定湖沼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地域을 特定湖沼水質管理區域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特定湖沼 또는 特定湖沼水質管理區域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할 市·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特定湖沼 또는 特定湖沼水質management區域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34條(特定湖沼水質保全 綜合對策 수립) ① 環境處長官은 第3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湖沼 또는 特定湖沼水質management區域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特定湖沼 또는 特定湖沼水質management區域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特定湖沼水質保全綜合對策을 수립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이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

1. 特定湖沼水質保全에 관한 基本原則

2. 下水道, 廢水 또는 地下處理施設의 整備, 湖沼의 浚渫등에 관한 事業計劃

3. 特定湖沼水質保全을 위한 特定湖沼水質management區域안의 規制對象의 施設의 범위 및 規制基準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特定湖沼水質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湖沼水質保全 綜合對策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湖沼水質保全對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35條(구체적 規制基準의 設定) 市·道知事는 特定湖沼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特定湖沼水質management區域안의 施設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施設(이하 “湖沼特定施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第34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에 따라 당해 施設의 設置 및 사용제한등에 관한 구체적 基準을 정하여 서울特別市·直轄市 또는 道 公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第36條(湖沼特定施設의 設置申告) ① 市·道知事が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 告示한 경우에 特定湖沼水質management區域안에 湖沼特定施設을 設置한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여야 하는 者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하게 당해 湖沼特定施設을 設置·사용하여야 한다.

- 第37條**(湖沼特定施設에 대한 改善命令등) ① 市·道知事는 特定湖沼水質管理區域 안에 第35條의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湖沼特定施設을 設置한 者에 대하여期間을 정하여 湖沼特定施設의 개선·汚染物質處理方法의 개선 기타 필요한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 당해 湖沼特定施設의 使用中止등 特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 第38條**(湖沼水質保全對策委員會) ① 湖沼水質保全을 위한 對策樹立과 特定湖沼水質保全綜合對策의 審議를 위하여 環境處에 湖沼水質保全對策委員會를 둘 수 있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湖沼水質保全對策委員會의 구성·機能·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6 章 防止施設業等

- 第39條**(防止施設業의 登錄)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위한 營業(이하 “防止施設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金·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第40條**(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產者, 限定治產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驚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懲役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46 附錄：環境關聯法律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1條(登錄의 取消등) 環境處長官은 防止施設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以下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0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の 任員중 第40條 第5號에該當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以内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위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工事を 一括하여 下都給한 경우

4. 1年에 2回 以上 營業停止 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시공을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1年 以内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以上 營業實績이 없는 경우

7.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42條(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防止施設業者の 繼續工事) ①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 處分을 받은 者는 그 處分전에 締結한 都給契約에 한하여 그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은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工監理者를 지정하여 工事を 管理·監督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계속하는 者는 당해 設計 또는 施工을 完了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防止施設業者로 본다.

第43條(廢水處理業 許可) ① 廢水의 受託處理를 위한 營業(이하 “廢水處理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金·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處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廢水處理業者の 廢水處理能力 및 廢水의 地域的 發生分布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③ 廢水處理業者の 준수사항, 處理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 ④ 廢水處理業者の 缺格事由 및 許可의 取消등에 관하여는 第40條 및 第4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4條(測定代行者の 지정) ① 汚染物質의 自家測定業務를 代行하고자 하는 者(이하 “測定代行者”라 한다)는 總理令이 정하는 技術能力 · 施設 및 整備를 갖추어 環境處長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은 總理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 測定代行業務의 적정성, 排出施設의 地域的 分布 및 測定代行業務의 需要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③ 測定代行者は 測定의 결과를 사실대로 記錄하고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④ 測定代行者の 준수사항, 測定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 ⑤ 測定代行者の 缺格事由 및 그 지정의 取消등에 관하여는 第40條 및 第41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7 章 土壤汚染防止

第45條(農耕地등의 汚染防止) 市 · 道知事는 特定水質有害物質에 의한 農耕地(草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山林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農耕地 및 山林에 流入되는用水의 水質基準을 정하거나 覆土 · 削土등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第46條(農水產物 栽培등의 제한) ① 市·道知事는 特別對策地域안의 土壤 또는 公共水域이 特定水質有害物質에 의하여 汚染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土地所有者 또는 農水產物의 栽培者등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汚染地域에 대한 農水產物의 栽培등을 제한하거나 그 汚染地域에서 生産된 農水產物을 收去·廢棄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水產物 栽培등에 제한 및 收去·廢棄로 인하여 입은 損害에 대하여는 特定水質有害物質을 排出한 者가 이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47條(農藥殘留許容基準) ① 環境處長官은 水質·土壤 또는 農作物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水質·土壤 또는 農作物의 農藥殘留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水質·土壤 또는 農作物중에 農藥殘留量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藥의 製造 금지·變更 또는 그 製品의 收去·廢棄등 必要한 措置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8章 條則

第48條(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教育) 防止施設業·廢水處理業 및 自家測定代行業務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排出施設管理人을 고용한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該當者에 대하여 環境處長官이 實施하는 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第49條(보고 및 檢查등) ① 環境處長官은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必要한 報告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當該 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1. 事業者
2. 第10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
3. 第3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湖沼特定施設의 申告를 한 者

4.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
5. 第4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者
6.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者
7. 第5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検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50條(國庫補助)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水質保全을 위한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

第51條(關係機關의 協助) 環境處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害蟲驅除方法의 改善
2. 農藥의 使用規制
3. 農業用水의 使用規制
4. 工業整備特別區域의 지정
5. 綠地地域, 風致地區 및 空地地區의 지정
6. 廢水 또는 下水處理施設의 設置
7. 公共水域의 浚渫
8. 河川占用許可의 取消, 河川工事의 施行中止, 變更 또는 그 工作物등의
移轉이나 제거
9. 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許可의 取消, 公有水面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施設등의 改築·撤去
10.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

第52條(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行為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53條(聽聞)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總理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處分의 상대방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處分의

상대방 또는 그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경우와 水質環境保全에 큰 危害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등
2.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등
3.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 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
4.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中止命令등
5. 第4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第43條 第4項 및 第44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包含한다)
6.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處分

第54條(手數料)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등을 받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1. 第10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
2.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 檢查
3.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4. 第4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
5. 第4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者의 지정 또는 變更指定

第55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管理公團法에 의한 環境管理公團 또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9章 罰則

第56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한 者
2. 第1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結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操業한 者
3.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者
4.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등을 위반한 者
5.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을 위반한 者
6.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이나 許可取消를 받고도 그 排出施設 · 防止施設을 운영한 者 또는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 · 使用禁止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7.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中止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

第57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한 者
2.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設計 또는 施工을 한 者
3. 第4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廉水處理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営業을 한 者
4. 第4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者的 지정 또는 變更指定을 받지 아니하고 測定業務를 代行한 者

第58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을 하지 아니한 者
2.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한 者
3. 第29條 第1項 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水質有害物質등을 버린 者

152 附錄：環境關聯法律

4. 第29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除去命令을 위반한 者
5. 第4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59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3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 또는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하거나 變更한 者
2. 第15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排出施設등의 運營狀況에 관한 記錄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 記錄한 者
3. 第15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4. 第15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5. 第22條 第1項 또는 第44條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測定結果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記錄한 者
6. 第23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排出施設管理人の 業務를 방해하거나 排出施設管理人の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者

第60條(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完了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の 任命 또는 改任에 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23條 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の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5.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の 變更命令을 위반한 者
6. 第29條 第1項 第3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7. 第3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8.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教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9. 第4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索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環境處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著가 第3項의 규정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處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61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6條 내지 第5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당해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水質汚染公定試驗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環境汚染公定試驗法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水質汚染公定試驗法으로 본다.

第 3 條(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4條 또는 第15條의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 또는 第13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으로 본다.

第 4 條(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許可를 받은 著는 第10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154 附錄：環境關聯法律

② 이 법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 第1項의 本文 또는 第15條의3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防止施設 또는 共同防止施設은 第11條 第1項 本文, 第13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은 第11條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使用開始申告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完了申告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7條 내지 第19條·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에 대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者는 第16條 내지 第18條·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3條 또는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의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은 第23條 第1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으로 본다.

第6條(排出賦課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賦課金의 納付命令·納入 및 滯納處分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納付命令·納入 및 滯納處分으로 본다.

第7條(自家測定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으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代行者의 지정은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代行者의 지정으로 본다.

第8條(廢水終末處理施設의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污染防止事業의 一環으로 設置되었거나 設置중인 綜合廢水處理施設은 第25條 第1項의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廢水終

末處理施設로 본다. 다만, 그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3條내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環境處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第2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處理區域을 지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 第25條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 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3條내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다.

第9條(防止施設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7條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著 또는 登錄이 取消된 者는 第39條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거나 또는 登錄이 取消된 것으로 본다.

第10條(廢水處理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廢水處理者의 지정을 받은 者는 第4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4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本金, 技術能力, 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第11條(農藥殘留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2條의2의 規定에 의한 農藥殘留許容基準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農藥殘留許容基準으로 본다.

第12條(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教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등 技術要員에 대한 教育訓練은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教育으로 본다.

第13條(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 당시 聽聞節次가 進行중에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그 종료 시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聽聞을 행한다.

第14條(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條件附許可·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156 附錄：環境關聯法律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15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6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騒音・振動規制法

1990. 8. 1
法律 第4259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工場·建設工事場·道路·鐵道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騒音·振動으로 인한 被害를 방지하고 騒音·振動을 적정하게 管理·規制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靜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騒音”이라 함은 機械·器具·施設 기타 物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振動”이라 함은 機械·器具·施設 기타 物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騒音·振動排出施設”이라 함은 騒音·振動을 발생하는 工場의 機械·器具·施設 기타 物體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騒音·振動 防止施設”이라 함은 騒音·振動 排出施設로부터排出되는 騒音·振動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防音施設”이라 함은 騒音·振動排出施設이 아닌 物體로부터 발생하는 騒音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防振施設”이라 함은 騒音·振動排出施設이 아닌 物體로부터 발생하는 振動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工場”이라 함은 工業配置法 第2條 第1號의 工場을 말한다. 다만, 都市計

劃法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된 空港施設내의 航空機 整備工場을 제외한다.

8. “交通機關”이라 함은 汽車·自動車·電車·道路 및 鐵道등을 말한다. 다만, 航空機 및 船舶을 제외한다.
9.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 第1號에 規定된 自動車와 重機管理法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의한 重機중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常時測定) ① 環境處長官은 全國의in 驚音·振動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常時 測定하여야 한다.

- ② 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내의 驚音·振動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測定을 할 수 있다.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第4條(測定網 設置計劃의 決定·告示) ① 環境處長官은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 범위 및 區域등을 명시한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第1項의 規定은 第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が 測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5條(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網設置計劃에 따라 測定網 設置에 필요한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定着된 物件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節次·損失·報償등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6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告示한 때에는 다음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河川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의 許可

2.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3. 公有水面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用 또는 사용의 허가
 ②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設置計劃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告示전에 당해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7條(騒音·振動公定試驗方法) 環境處長官은 騒音·振動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正確과 統一 을 기하기 위하여 騒音·振動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이 騒音·振動測定對象과 그 試驗方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試驗方法에 의한다.

第2章 工場騒音·振動의 規制

第8條(工場騒音·振動 排出許容基準) 騒音·振動排出施設(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에서排出되는 騒音·振動의 排出許容基準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의 意見을 들어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9條(排出施設의 設置許可등) ①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許可를 받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10條(防止施設의 設置)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變更할 때에는 그 排出施設로부터排出되는 騒音·振動을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 이하로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騒音·振動 防止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環境處長官이 環境政策基本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그 排出施設의 機能 및 工程上 騒音·振動이 排出許容基準 이하로排出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160 附錄：環境關聯法律

2. 驚音·振動이 排出許容基準을 超過하여 排出되더라도 生活環境에 被害를
줄 우려가 없다고 總理令으로 정하는 경우

第11條(防止施設의 設計·施工) 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驚音·振動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防止施設業者”라 한다)
가 設計·施工하여야 한다. 다만, 總理令이 정하는 防止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는 경우 및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事業者 스스로 防止施設을 設計·施工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第12條(共同防止施設의 設置承認등) ① 아파트형工場의 事業者 또는 工場이 密集된
地域의 事業者는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驚音·
振動의 共同防止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는
工場別로 당해 工場의 驚音·振動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②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承認을 얻어야 한다.
③ 共同防止施設에 있어서의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
容基準과 다른 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그 排出許容基準 및 共同防止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13條(設置完了의 申告) ① 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을
完了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이내에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
長官에게 申告하고 지정한 期日내에 檢查를 받아야 한다.
② 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查結果 適合判定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施設을 이용하여 操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條(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正常運營) ① 事業者는 操業을 할 때에는 排出施
設에서 排出되는 驚音·振動이 第8條 또는 第1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
出許容基準에 適合하도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여야 한다.
② 事業者는 操業을 할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에 관한 狀況을 사실대로 記錄하여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第15條(改善命令) 環境處長官은 第1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適合判定을 받아
操業중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驚音·振動의 정도가 第8條 또는 第1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事業者에게 당해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措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命할 수 있다.

第16條(操業停止命令 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期間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檢查結果 第8條 또는 第1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騒音·振動으로 인한 健康上 危害와 生活環境의 被害가 急迫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제한·操業停止 기타 필요한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17條(施設의 移轉命令 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하여도 당해 工場의 位置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判斷되거나 住民의 健康上의 危害와 住民環境上의 被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그 공장의 移轉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場을 移轉하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를 減免할 수 있다.

第18條(許可의 取消 등) 環境處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操業을 停止시키거나 그 排出施設에 대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때
2.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때

第19條(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 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한 者에 대하여는 당해 排出施設의 사용금지 또는 閉鎖를 命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閉鎖命令을 받고 이 행하지 아니한 工場에 대하여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氣·水道의 設置나 供給을 중단하도록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20條(自家測定) ① 事業者は 그 排出施設을 운영할 때에는 排出되는 驚音·振動을 自家測定하거나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者로 하여금 測定하게 하고 그 結果를 사실대로 記錄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② 測定의 대상·項目·방법 기타 測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21條(排出施設管理人) ① 事業者は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정상적인 運營·管 理를 위하여 排出施設管理人을 任命하고, 이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排出施設管理人을 改任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排出施設管理人은 그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당해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管理하여야 한다.

③ 事業者は 排出施設management人이 그 遵守事項을 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排出施設management人的 管理事項을 監督하여야 한다.

④ 事業者は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정상적인 運營·管 理를 위한 排出施設 management人的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management人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排出施設management의 資格基準 및 그 준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22條(排出施設管理人の 變更命令) 環境處長官은 排出施設management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事業者에 대하여 排出施設management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第3章 建設騒音·振動의 規制

第23條(建設騒音·振動 規制地域의 지정) ① 市·道知事는 住民의 靜穏한 生活環 境을 유지하기 위하여 特定工事로 인하여 발생되는 驚音·振動을 規制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建設騒音・振動 規制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工事場의 종류 및 規制地域의 범위는 總理令으로 정한다.

③ 市・道知事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24條(建設騒音・振動 規制基準) 市・道知事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域안의 騒音・振動 發生源에 대한 規制基準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25條(特定工事의 事前申告) ①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에서 特定工事を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市・道知事은 特定工事로 인한 騒音・振動이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作業時間의 調整,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을 命할 수 있다.

第26條(위반사항에 대한 措置等) 市・道知事은 第2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에 대하여 당해 工事의 中止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27條(爆薬의 사용으로 인한 騒音・振動의 規制) ① 市・道知事은 採石場・工事場등에서 사용하는 爆薬으로 인한 騒音・振動으로부터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을 유지하기 위하여 採石場・工事場등을 운영・管理하는 者에 대하여 그사용의 規制를 위한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② 採石場・工事場등을 운영・管理하는 者는 爆薬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爆薬의 使用申告를 하여야 할 地域・時期・대상・방법・爆薬의 종류 기타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爆薬使用의 規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4章 交通騒音·振動의 規制

第28條(交通騒音·振動 規制地域의 지정) ① 市·道知事는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을 유지하기 위하여 交通機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騒音·振動을 規制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交通騒音·振動 規制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의 범위는 總理令으로 정한다.

③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制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29條(交通騒音·振動 規制基準) 市·道知事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處長官의 승인을 얻어 당해 地域의 騒音·振動 規制基準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第30條(自動車 運行의 規制) 市·道知事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을 通行하는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이하 “自動車運行者”라 한다)에 대하여 警音器의 使用禁止·速度의 制限·迂迴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31條(防音施設의 設置等) 市·道知事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에서 自動車專用道路·高速道路 및 鐵道로 부터 發生하는 騒音이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을 초과하여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이 侵害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防音施設을 設置하거나 당해 施設管理機關의 長에게 防音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管理機關의 長은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2條(製作車騒音許容基準) 自動車를 製作(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製作되는 自動車(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騒音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作車騒音許容基準에 적합하게 製作하여야 한다.

第33條(製作車에 대한 認證) ① 自動車製作者は 製作車에 대하여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騒音許容基準에 적합하다는 環境處長官의 認證을 받아 製作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處長官은 總理令이 정하는 自動車에 대하여는 認證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② 自動車製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받은 自動車에 대하여 그 認證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시 認證을 받아야 한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申請·認證의 方法 및 認證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34條(製作車의 騒音検査 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아 製作한 自動車의 騒音이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 騒音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지정하는 自動車關聯 研究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 ③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하여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 製作者の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檢査를 할 수 있다.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은 自動車 製作者の 負擔으로 하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關聯 研究機關이 檢査를 실시하는 경우의 檢査手數料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35條(認證의 取消) 環境處長官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경우
2. 製作車에 중대한 缺陷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製作車 騒音許容基準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第36條(運行車 騒音許容基準) 自動車 運行者は 그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騒音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運行車騒音許容基準에 적합하게 運行하여야 한다.

第37條(運行車의 隨時點檢) ① 環境處長官은 運行車의 騒音이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 騒音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道路 또는 駐車場등에서 運行車에 대한 點檢을 실시할 수 있다.

② 自動車運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에 協調하여야 하며, 이에 不應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38條(運行車의 改善命令) ① 環境處長官은 運行車에 대하여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點檢結果 그 自動車의 騷音이 運行車 騷音許容基準을 초과하는 경우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運行者 또는 所有者에 대하여 개선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10日 이내의 범위안에서 개선에 필요한 期間동안 당해 自動車의 使用停止를 함께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은 者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지정하는 者로부터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環境處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5章 生活騷音의 規制

第39條(生活騷音의 規制) ① 市·道知事는 住民의 靜謐한 生活環境을 유지하고 居住環境에 散在되어 있는 各種 騷音 發生源에서 발생되는 騷音으로 인한被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生活騷音 規制地域, 規制對象 및 規制基準을 정하고 그 基準에 따라 規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活騷音 規制地域, 規制對象 및 規制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40條(防音施設의 設置등) ① 市·道知事는 生活騷音 規制地域안에서 발생하는 騷音이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 騷音을 發生하는 者에 대하여 作業時間의 調整·騷音發生行爲의 중지·防音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時間의 調整·騷音發生行爲의 중지·防音施設의 設置등의 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規制對象의 사용금지 또는 閉鎖를 命할 수 있다.

第41條(移動騒音源의 規制) ① 市・道知事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騒音 規制地域안의 移動騒音源에 대하여 騒音을 減少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騒音源의 種類・規制方法・規制事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 6 章 航空機騒音의 規制

第42條(航空機騒音의 規制) ① 環境處長官은 航空機騒音 測定結果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의 유지 및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에게 航空機騒音의 減少 및 被害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航空機騒音 規制에 관한 다른 法律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 7 章 防止施設業等

第43條(防止施設業의 登錄)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위한 營業(이하 “防止施設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資本金・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은 總理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44條(缺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產者, 限定治產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에 위반하여 戰役이상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5條(登錄의 取消등) 環境處長官은 防止施設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하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4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4條 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工事を 一括하여 下都給한 경우
4. 1年에 2回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1년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이상 營業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46條(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防止施設業의 繼續工事) ①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者는 그 處分전에 締結한 都給契約에 한하여 그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處長官은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工監理者를 지정하여 工事を 管理·監督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計 또는 施工을 계속하는 者는 당해 設計 또는 施工을 완료할때까지 이 法에 의한 防止施設業者로 본다.

第47條(測定代行者的 지정) ① 驚音·振動의 自家測定業務를 代行하고자 하는 者 (이하 “測定代行者”라 한다)는 總理令이 정하는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處長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總理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 測定代行業務의 適正性・排出施設의 地域的 分布 및 測定代行業務의 需要등을 고려하여 필 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③ 測定代行者는 測定結果를 사실대로 記錄하고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 ④ 測定代行者의 준수사항・測定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 한다.
- ⑤ 測定代行者の 缺格事由 및 그 지정의 取消등에 관하여는 第44條 및 第4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8條(検査代行者の 지정) ① 第38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개선결과 確認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者 또는 第49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查用器機에 대한 檢查業務를 委託받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등을 갖추어 環境處長官으로부터 檢查代行者的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總理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함에 있어서 檢查代行業務의 適正性 및 需要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 ③ 檢查代行者는 檢查의 결과를 사실대로 記錄하고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保存하여야 한다.
- ④ 檢查代行者의 준수사항・檢査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 한다.
- ⑤ 檢查代行者の 缺格事由 및 그 지정의 取消등에 관하여는 第44條 및 第4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8章 捷　　則

第49條(測定器機의 形式承認等) ① 騒音・振動의 정도를 檢査 또는 測定하는 器機・

器具(이하 “**検査用器機**”라 한다)를 製作(輸入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處長官의 形式承認을 받아야 한다. 形式承認받은 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形式承認을 받은 檢査用器機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處長官의 精度檢查를 받아야 한다.

③ 環境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를 檢査ability이 있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④ 檢査用器機의 形式承認, 精度檢查의 内容・節次・基準・대상 및 手數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50條(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教育) 防止施設業・自家測定代行業務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排出施設管理人을 履傭한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者에 대하여 環境處長官이 실시하는 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第51條(보고 및 檢査등) ①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출입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
 2.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工事 施行者
 3.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爆藥을 사용하는 採石場・工事場등의 運營・管
理者
 4.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 製作者
 5. 第3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檢查를 委託받은 者
 6.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
 7. 第4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者
 8. 第4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
 9. 第4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用器機 製作者
 10. 第5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업무를 委託받은 者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52條(關係機關의 協調) 環境處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號에 해당하는措置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都市再開發事業의 變更
2. 住宅團地造成의 變更
3. 道路·鐵道 및 空港周邊의 共同住宅建築許可의 制限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第53條(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54條(聽聞) 環境處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處分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居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와 住居環境에 큰 危害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등
2.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
3.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 또는 許可取消
4.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의 중지등 命令
5. 第4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閉鎖命令
6.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停止(第47條 第5項 및 第48條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處分

第55條(手數料)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등을 받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9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

2.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調查
3.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4. 第4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者의 지정 또는 變更指定

第56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9章 罰則

第5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懲役 또는 1千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을 위반한 者
2. 第1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3.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作車 驚音許容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自動車를 製作한 者
4.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반지 아니하고 自動車를 製作한 者

第5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한 者
2. 第1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適合判定을 받지 아니하고 操業을 한 者
3. 第14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을 正常運營하지 아니한 者
4. 第16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등을 위반한 者
5.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中止등 命令 또는 第4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6. 第2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爆藥使用에 관한 命令을 위반한 者
7.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防止施設을 設計 또는 施工한 者
8.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者의 지정 또는 變更指定을 받지 아니하고 測定業務를 代行한 者
9. 第49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形式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檢查用器機를 製作한 者

第59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1.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한 者
2. 第2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時間의 調整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
3.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60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하거나 變更한 者
2. 第14條 第2項, 第20條 第1項, 第47條 第3項 또는 第48條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排出施設 運營狀況등에 관한 記錄을 保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記錄한 者
3.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을 하지 아니한 者
4. 第21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排出施設管理人的 業務를 방해하거나 排出施設management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者
5. 第3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4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時間의 調整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

第61條(過怠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9條 第2項, 第21條 第1項, 第25條 第1項 또는 第2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完了의 申告를 아니한 者
 3. 第21條 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4.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의 變更命令을 위반한 者
 5.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警音器의 使用禁止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
 6.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 驚音許容基準을 초과하여 自動車를 운행한 者
 7.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點檢에 不應 또는 방해한 者
 8. 第4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騒音源의 規制를 위한 命令을 위반한 者
 9. 第49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度檢查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者
 10.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教育을 받게하지 아니한 者
 11. 第5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한 者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賦課·徵收한다.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環境處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環境處長官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62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7條 내지 第6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騒音·振動公定試驗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環境污染公定試驗法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騒音·振動公定試驗方法으로 본다.

第 3 條(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4條 또는 第15條의3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 또는 第12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으로 본다.

第 4 條(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 第1項 本文 또는 第15條의3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防止施設 또는 共同防止施設은 第10條 第1項 本文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은 第10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使用開始 申告를 하거나 適合判定을 받은 者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完了申告 또는 適合判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7條 내지 第19條·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에 대한 改善命令·操業停止·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자는 第15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排出施設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3條 또는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的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은 第21條 第1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으로 본다.

第6條(自動車騒音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騒音許容基準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騒音許容基準으로 또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騒音許容基準으로 본다.

第7條(防止施設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7條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者 또는 登錄이 取消된 者는 第43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거나 또는 登錄이 取消된 것으로 본다.

第8條(測定器機의 形式承認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0條의3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騒音檢查用 器機의 形式承認·確認檢查 또는 精度檢查를 받은 것은 第49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形式承認 또는 精度檢查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9條(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教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등 技術要員에 대한 教育은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教育으로 본다.

第10條(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 당시 聽聞節次가 進行중에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그 종료 시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聽聞을 행한다.

第11條(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증인 行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條件附許可·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行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行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行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行위로 본다.

第12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 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有害化學物質管理法

1990. 8. 1
法律 第4261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化學物質의 有害性을 審查하고 有害化學物質을 적정하게
管理함으로써 國民保健 및 環境保全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化學物質”이라 함은 元素 및 化學反應에 의하여 生成되는 物質을 말한다.
2. “有毒物”이라 함은 사람의 健康 또는 環境에 危害를 미칠 毒性이 있는
化學物質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特定有毒物”이라 함은 그 危害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有毒物로서
總理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適用範圍) 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化學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1.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 物質
2. 藥事法에 의한 醫藥品 · 醫藥部外品 및 化粧品
3. 麻藥法에 의한 麻藥
4.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에 의한 向精神性醫藥品
5. 農藥管理法에 의한 農藥
6. 肥料管理法에 의한 肥料

第4條(國家의 責務) 國家는 有害化學物質로 인한 國民保健 또는 環境保全上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有害化學物質의 適正管理를 위한 技術을 開發하고

教育 및 弘報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 有害化學物質의 適正管理에 필요한 行政上·財政上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5條(營業者의 責務) 有害化學物質을 製造·販賣 또는 취급하는 者는 有害化學物質로 인한 國民保健 또는 環境保全上의 危害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施設·裝備의 적정유지, 從業員의 教育, 技術開發 및 情報의 交換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有害化學物質의 適正management를 위한 國家施策에 참여하고 이에 協力하여야 한다.

第2章 化學物質의 有害性 審查

第6條(製造·輸入의 申告)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性狀 및 安全性등 당해 化學物質에 대한 有害性 審查에 필요한 資料를 첨부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有害性 審查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製造 또는 輸入하여서는 아니된다.

第7條(有害性 審查) ① 環境處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때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審查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有害性을 審查하여야 한다.

② 環境處長官은 審查에 필요한 경우 實驗成績書 기타 關係資料의 제출을 化學物質의 製造 또는 輸入者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驗成績書를 발급할 수 있는 專門機關의 범위 기타 有害性 審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化學物質審查團) ① 化學物質의 有害性 審查를 위한 필요한 技術檢討 및 資料檢討를 하기 위하여 環境處長官 소속하에 化學物質審查團을 둔다.
② 化學物質審查團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審查結果의 통보등) ① 環境處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化學物質의 有害性을 審查한 때에는 그 審查結果를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

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查結果 당해 化學物質이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심각한 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그 製造 또는 輸入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 (3) 環境處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 또는 輸入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化學物質에 대하여는 그 名稱과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3章 有毒物營業者的登錄

第10條(有毒物營業者の登錄) ① 다음의 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總理令으로 정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有毒物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하는 有毒物製造業
 2. 有毒物을 販賣하는 有毒物販賣業
 3. 有毒物을 보관·貯藏 또는 運搬하거나 總理令으로 정하는一定量 이상을 사용(이하 “취급”이라 한다)하는 有毒物取扱業
- ②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藥事法에 의한 藥局改設者 또는 醫藥品 販賣業者는 總理令으로 정하는 有毒物을 販賣할 수 있다.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製造業, 有毒物販賣業 또는 有毒物取扱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裝備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第11條(有毒物營業者の缺格事由)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有毒物營業者(第10條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营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產者, 限定治產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以上의 刑의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第15條의 规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서 取消된 당해 有毒物營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
4. 任員중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12條(品目의 登錄등) ① 有毒物製造業者 및 有毒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이하 “有毒物輸入者”라 한다)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品目마다 環境處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은 總理令으로 정하는 重要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第15條 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品目은 그 取消된 날부터 2年간 당해 品目의 登錄을 할 수 없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品目登錄時 당해 品目의 適正管理에 필요한 施設·裝備의 具備등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③ 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品目登錄을 한 者는 登錄한 成分 및 含量과 다른 有毒物을 製造하거나 輸入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有毒物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品目 및 數量을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3條(特定有毒物의 製造禁止등) ① 環境處長官은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심각한 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特定有毒物에 대하여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그 製造·輸入·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環境處長官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製造·輸入·販賣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特定有毒物에 대하여는 그 名稱과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14條(廢業등의 申告) 有毒物營業者는 그 營業을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再開業하는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5條(登錄의 取消등) ① 環境處長官은 有毒物營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11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11條 第4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경우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第10條 第1項 各號의 營業에 관계되는 사항의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되어 營業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5. 1年에 2回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有毒物로 인한 事故가 발생할 경우
7.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두가지 品目이상 品目登錄이 取消되거나 製造 또는 輸入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8.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후 1년 이내에 營業을開始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以上 休業한 경우
9.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② 環境處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品目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品目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製造 또는 輸入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品目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品目登錄을 한 경우
2.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당해 有毒物로 인한 事故가 발생한 경우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16條(改善命令 등) ① 環境處長官은 有毒物營業者에 대하여 施設·裝備등이 第10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要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개선을 命할 수 있다.

② 建築物의 所有者와 有毒物營業者가 다른 경우 建築物의 所有者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따른 施設의 개선에 협조하여야 한다.

第17條(移轉命令) 環境處長官은 당해 事業場이 인근의 人命과 財產에 막대한 被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有毒物營業者에게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그 事業場의 移轉을 命할 수 있다.

第4章 有毒物의 管理

第18條(有毒物管理者) ① 有毒物營業者 및 有毒物輸入者は 有毒物의 適正管理를 위하여 事業場마다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毒物管理者를 任命하고 이를 環境處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有毒物管理者를 改任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有毒物管理者는 有毒物 製造·輸入·販賣 또는 취급에 관하여 당해 營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總理令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有毒物營業者 및 有毒物輸入者は 有毒物管理者가 그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有毒物管理者의 管理사항을 監督하여야 한다.

④ 有毒物營業者·有毒物輸入者 및 당해 營業에 종사하는 者는 有毒物의 適正management 위한 有毒物管理者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9條(有毒物管理者의 變更命令) 環境處長官은 有毒物管理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有毒物營業者 또는 有毒物輸入者에 대하여 有毒物管理者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第20條(有毒物의 표시) ① 有毒物營業者 및 有毒物輸入者は 有毒物을 보관·貯藏 또는 陳列하는 場所와 運搬車輛에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有毒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有毒物製造業者 또는 有毒物輸入者가 有毒物을 製造 또는 輸入한 때에는 容器나 포장에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有毒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產業安全保健法에 의한 有害物質表示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1條(有毒物管理記錄의 보존) 有毒物營業者 및 有毒物輸入者는 有毒物을 製造 · 輸入 · 販賣 또는 취급함에 있어서 그 有毒物의 名稱 · 數量 등 有毒物管理에 관한 사항을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記錄 · 보존하여야 한다.

第22條(有毒物의 販賣 및 供與의 제한) ① 有毒物營業者는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有毒物을 販賣하거나 供與하여서는 아니된다.

1. 14 歲 未滿者

2. 精神疾患者 또는 麻藥 기타 有毒物의 중독자

② 有毒物販賣業者, 藥事法에 의한 藥局開設者 또는 醫藥品販賣業者는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有毒物을 販賣 또는 供與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3條(特定有毒物質의 使用許可) ① 有毒物營業者가 아닌 者가 特定有毒物(產業安全保健法에 의한 使用制限 有害物質을 제외한다)을 所持 · 使用 · 讓渡 또는 讓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品目別로 環境處長官의 使用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特定有毒物의 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그 許可받은 使用目的의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第15條 第1項 第1號 · 第3號, 同條 第2項 및 第21條의 規定은 第1項의 特定有毒物의 使用許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4條(事故時의 措置) 有毒物營業者, 有毒物輸入者 또는 特定有毒物使用 許可를 받은 者는 그 有毒物을 管理 또는 사용함에 있어 保健衛生 또는 環境保全法上의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管轄保健所 · 警察官署 · 消防官署 · 地方環境官署 또는 地方勞動官署에 申告하고 危害防止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5條(廢棄方法) 有毒物을 폐기하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第26條(幻覺物質의 吸入등의 禁止) ① 누구든지 興奮 · 幻覺 또는 痛醉의 作用을 일으키는 有毒物을 含有하는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이하 “幻覺物質”이라 한다)을 攝取 또는 吸入하거나 이러한 目的으로 所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幻覺物質을 攝取 또는 吸入하고자 하는 者에게 그 情을 알면서 이를 販賣 또는 供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章 補 則

第27條(有毒物管理者에 대한 教育) 有毒物營業者 및 有毒物輸入者는 有毒物管理者에 대하여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실시하는 教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第28條(보고 및 檢查) ① 環境處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의 製造, 輸入者, 有毒物營業者, 有毒物輸入者, 特定有毒物 使用許可를 받은 者 및 第34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命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試驗上 필요한 最少分量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9條(有毒物監視員) ① 第2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業務를 행하기 위하여 環境處・地方環境官署・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에 有毒物監視員을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監視員의 任免・職務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有毒物管理協會) ① 有毒物營業者 및 有毒物 輸入者는 有毒物의 適正管理, 技術開發 기타 營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有毒物管理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定款을 작성하여 環境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環境處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하거나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이나 任員의 改任을 命할 수 있다.
- ⑤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中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1條(行政處分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行為에 대한 行政 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總理令으로 정한다.

第32條(聽聞) 環境處長官은 第9條 第2項, 第13條 第1項, 第15條(第23條 第3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내지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處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處分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處分의 상대방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處分의 상대방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와 國民保健 또는 環境保全上 甚 危害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3條(手數料)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申告 또는 登錄을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總理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1.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의 製造 또는 輸入의 申告
2.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者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3.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目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4.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有毒物의 使用許可

第34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 이 法에 의한 環境處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 또는 地方 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② 環境處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6章 罰則

第35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者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3.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目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有毒物을 製造 또는 輸入한 者
4.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移轉命令을 위반한 者
5. 第23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36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9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한 者
2. 第12條 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13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特定有毒物을 製造 · 輸入 · 販賣 또는 사용한 者
4. 第20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22條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37條(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有毒物을 輸出한 者
2.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毒物管理者를 任命하지 아니한 者
3.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毒物을 폐기한 者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38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8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有毒物管理者
2. 第18條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毒物管理에 관한 사항을 記錄・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第39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毒物管理者의 任命 또는 改任에 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管理者의 變更命令을 위반한 者
4.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6.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제출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處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處長官은 지체없이 관할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40條(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5條 내지 第3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毒物 및 劇物에 관한 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化學物質 製造·輸入申告 및 申告對象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合成化學物質의 製造 또는 輸入의 申告를 한 者는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有毒物營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毒物및劇物에 관한法律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毒劇物製造業의 登錄을 한 자는 第10條 第1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製造業 登錄을 한 것으로, 同法 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毒劇物販賣業의 登錄을 하거나 許可를 받은 者는 第10條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販賣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同法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毒物의 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有毒物의 使用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毒物및劇物에 관한法律 第7條, 第12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둔 毒劇物管理者는 第18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管理者로 任命하고 申告한 것으로 본다.

③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毒物및劇物에 관한法律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修命令을 한 것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毒物및劇物에 관한法律 第26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停止 또는 登錄取消의 處分을 받은 者는 第1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 또는 登錄取消의 處分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毒物및劇物에 관한法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 또는 廢業의 申告를 한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5條(有毒物 品目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毒物및劇物에 관한法律 第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毒劇物 製造品目登錄을 한 者는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品目 登錄을 한 것으로, 同法 第1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毒劇物 輸入品目登錄을 한 者는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品目登錄을 한 것으로, 同法 第11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毒劇物 輸出品目登錄을 한 者는 第12條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申告를 한 것으로, 同法 第20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毒物의 製造 또는 輸入品目許可를 받은 者는 第1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目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毒物및劇物에 관한法律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目登錄이 取消된 者는 第1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目의 登錄이 取消된 것으로 본다.

第6條(特定有毒物 製造禁止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毒物및劇物에 관한法律 第26條 第1項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指定한 毒劇物은 第13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輸入·販賣 또는 사용금지 또한 제한되는 特定有毒物로 본다.

第7條(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毒物및劇物에 관한法律에 의한 聽聞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 당시 聽聞節次가 진행중에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聽聞을 행한다.

第8條(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2條의3 및 毒物및劇物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행한 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行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行위로 본다.

第9條(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2條의 3과 毒物및劇物에 관한法律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2條의3 또는 毒物및劇物에 관한法律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環境汚染被害紛爭調整法

1990. 8. 1
法律 第4258號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법은 環境汚染으로 인한 被害의 調査와 紛爭調整을 위한 일선·調停 및 裁定의 節次 등을 規定함으로써 国民의 健康 및 財產上의 被害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救濟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章 環境紛爭調整委員會

第2條(環境紛爭調整委員會) ① 環境汚染의 被害로 인한 紛爭의 調整을 위하여 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이하 “中央環境委員會”라 한다)와 地方環境紛爭調整委員會(이하 “地方環境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 中央環境委員會는 環境處에, 地方環境委員會는 서울特別市, 直轄市와 道에 각각 設置한다.

第3條(管掌) ① 中央環境委員會는 環境汚染의 被害로 인한 紛爭의 裁定과 2이상의 서울特別市, 直轄市 도는 道에 걸치는 紛爭事件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紛爭事件을 管掌한다.

② 地方環境委員會는 당해 서울特別市, 直轄市 또는 道의 管轄區域안에서 발생한 事件중 中央環境委員會의 管掌에 속하지 아니하는 事件을 管掌한다.

第4條(中央環境委員會의 구성 등) ① 中央環境委員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 7

人으로 구성한다.

② 委員 7人中 常任委員은 3人이내로 한다.

③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다만,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残任期間으로 한다.

第5條(中央環境委員會 委員의 任免) ① 中央環境委員會의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중에서 環境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를 環境處長官의 提請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1. 1級상당의 公務員으로 1年以上 재직한 者

2. 2級 또는 3級상당의 公務員으로 3年이상 재직한 者

3. 判事, 檢事, 軍法務官 또는 辯護士의 職에 6年이상 재직한 者

4. 公認된 大學에서 副教授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한 者

5. 環境關係業務에 15年이상 종사한 者로서 環境處長官이 資格이 있다고 인정하는 者

② 中央環境委員會 委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解任 또는 解囑할 수 있다.

1. 心身障礙로 인하여 職務執行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2. 職務怠慢,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委員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第6條(中央環境委員會 委員長 및 委員의 職務) ① 中央環境委員會 委員長은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中央環境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② 中央環境委員會 委員은 獨립하여 해당 紛爭事件에 대한 調整을 행한다.

③ 中央環境委員會 委員長이 사고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中央環境委員會 委員長이 미리 지정한 委員이 그 職務를 대행한다.

第7條(事務局) ① 中央環境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둘 수 있다.

② 事務局의 組織 및 運營등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령으로 定한다.

第8條(審查官 등의 職務) ① 中央環境委員會 委員長의 命을 받아 다음의 事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中央環境委員會에 審查官을 둔다.

1. 環境污染의 被害로 인한 紛爭의 調整에 필요한 事實調查와 因果關係 紛明
2. 環境污染被害額의 算定 및 算定基準의 開發과 研究
3. 第15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알선 또는 調停의 申請
4. 기타 中央環境委員會 委員長이 지정하는 사항
 - ② 中央環境委員會 委員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 또는 中央環境委員會 소속 職員중에서 審查官을 指名한다.
 - ③ 中央環境委員會 委員長은 特定事件에 관한 專門的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關係專門家를 위촉하여 第1項 第1號 또는 第2號의 事務를 행하게 할 수 있다.

第9條(運營規程) 中央環境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地方環境委員會의 구성 등) ① 地方環境委員會는 20人 이내의 非常任委員으로 구성되어 公益을 대표할 수 있는 者와 環境, 產業 또는 公衆保健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 중에서 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② 地方環境委員會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第11條(地方環境委員會 委員의 解任·解囑) 地方環境委員會 委員의 解任 또는 解囑에 관하여는 第5條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2條(祕密漏泄禁止)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의 委員, 職員(審查官 및 委員會所屬 職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第8條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專門家(이하 “關係專門家”라 한다)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上 알게된 祕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3條(委員會의 調査權 등)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는 그 紛爭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事業者, 參考人 또는 鑑定人에 대하여 출석하여 陳述 또는 鑑定하게 하거나 필요한 文書,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中央環境委員會 및 地方環境委員會 委員 또는 職員으로 하여금 當

事者가 점유하고 있는 工場, 事業場 기타 紛爭事件과 관련이 있는 場所에出入하여 關係文書 또는 물건을 調査·閱覽하게 할 수 있다.

第14條(規則 制定權) 中央環境委員會는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의 所管事務에 대한 처리절차와 環境汚染被害額 算定 및 算定基準에 관한 規則을 따로 정할 수 있다.

第3章 紛爭調整

第1節 調整의 申請 등

第15條(알선·調停의 申請) ① 環境汚染의 被害로 인한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 關係當事者の 일방 또는 쌍방은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管轄地方環境委員會에 紛爭의 알선 또는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件을 調査한 審查官은 被害當事者の 同意를 얻어 당해 紛爭에 관하여 알선 또는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第16條(裁定의 申請) ① 環境汚染의 被害로 인한 紛爭이 발생한 때에는 被害當事者は 中央環境委員會에 損害賠償의 責任에 관한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請한 알선 또는 調停이 第20條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중단된 경우에 當事者の 일방 또는 쌍방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第17條(참가) ① 環境汚染의 被害로 인한 紛爭이 調停 또는 裁定에 繫留되고 있는 경우에 동일한 環境汚染 원인에 의한 被害를 주장하는 者는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의 승인을 얻어 當事者로서 해당 節次에 參加할 수 있다.

②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가 第1項의 승인을 할 때에는 當事者の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2節 알 선

第18條(斡旋委員의 指名) ①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에 의한 알선은

196 附錄：環境關聯法律

3人 이내의 委員(이하 “斡旋委員”이라 한다)이 행한다.

② 斡旋委員은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 委員중에서 事件마다 각각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 委員長이 指名한다.

第19條(斡旋委員의 任務) 斡旋委員은 當事者間의 紛爭을 試行하고 쟁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事件이 公正하게 解決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20條(試行의 중단) ① 斡旋委員은 試行으로서는 紛爭 解決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試行을 중단할 수 있다.

② 試行중인 紛爭에 대하여 調停 또는 裁定申請이 있는 때에는 당해 試行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第3節 調 停

第21條(調停委員의 指名 등) ①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에 의한 調停은 3人으로 구성되는 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事件의 調停은 1人の 委員이 행할 수 있다.

② 調停委員會의 委員(이하 “調停委員”이라 한다)은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 委員중에서 事件마다 각각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 委員長이 指名한다.

③ 調停委員會의 會議는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 委員長이 따로 指名한 調停委員이 召集한다.

④ 調停委員會의 會議는 構成員 全員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22條(調停전의 措置) 調停委員會는 調停전에 當事者에 대하여 調停의 實現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중지를 勸告하거나 기타 調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措置를 취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第23條(調停案의 受諾勸告) ① 調停委員會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調停案을 작성하고 當事者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30일 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그 受諾을 勸告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에 대하여 當事者가 期間내에 受諾拒否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調停案과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第24條(調停案의 公表) 調停委員會는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를 한 때에는 第2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유를 불여 당해 調停案을 公表할 수 있다.

第25條(調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調停委員會는 당해 紛爭이 그 性質上 調停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當事者가 부당한 目的으로 調停을申請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調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調整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을 하지 아니하도록 決定한 때에는 그 사실을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6條(調停의 중단) ① 調停委員會는 당해 調停事件에 관하여 當事者間에 合意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調停을 중단할 수 있다.

② 第2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가 있은 후 지정된 期間내에 當事者로부터受諾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當事者間의 調停은 중단된다.

③ 調停委員會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이 중단된 때에는 이를 當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27條(節次의 非公開)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가 행하는 調停의 節次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第4節 裁 定

第28條(裁定委員의 指名 등) ① 裁定은 中央環境委員會 委員 5人으로 구성되는委員會(이하 “裁定委員會”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事件의 裁定은 3人으로 구성되는 裁定委員會에서 행할 수 있다.

② 裁定委員會의 委員(이하 “裁定委員”이라 한다)은 中央環境委員會 委員 중에서 事件마다 中央環境委員會 委員長이 指名한다.

③ 裁定委員會의 會議는 中央環境委員會 委員長이 따로 指名한 裁定委員이 召集한다.

④ 裁定委員會의 會議는 構成員 全員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29條(裁定委員의 除斥 등) ① 裁定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職務의 집행에서 除斥된다.

1. 裁定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事件의 當事者가 되거나 당해 事件에 관하여 共同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裁定委員이 당해 事件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裁定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陳述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裁定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裁定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대상이 된 處分 또는 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當事者는 裁定委員에게 職務執行이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裁定委員會는 忌避申請에 대하여 決定權을 갖는다.

③ 裁定委員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職務執行에서 回避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裁定節次에 관여하는 職員 및 關係專門家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30條(裁定節次의 중지) 裁定委員會는 除斥 또는 忌避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申請에 대한 決定이 있을 때까지 裁定節次를 중지하여야 한다.

第31條(代表當事者的 선정) ① 紛爭에 대하여 공동의 利害關係가 있는 多數人은 그들중에서 全員을 위하여 裁定의 當事者가 되는 1人 또는 數人을 代表當事者로 선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表當事者를 선정한 者(이하 “選定者”라 한다)는 그 선정을 철회하거나 變更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表當事者の 선정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철회 또는 變更是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④ 代表當事者를 선정한 때에는 代表當事者외의 選定者は 裁定節次에서 당연히 제외된다.

第32條(代表當事者の 選定命令) ① 共同의 利害關係를 가진 當事者が 多數인 경우에 裁定委員會는 代表當事者를 선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共同利害當事者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代表當事者的 선정을 命할 수 있다.

② 裁定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철회 또는 變更할 수 있다.

第33條(裁定委員會에 의한 代表當事者の 選定) ① 裁定委員會는 共同利害當事者가 第3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고도 代表當事者를 選定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를 選定하지 아니하면 裁定節次의 進行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共同利害當事者 중 적당한 者를 代表當事者로 選定할 수 있다. 이 경우 裁定委員會는 代表當事者로서의 資格을 特定爭點에 관한 審理에 限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定된 代表當事者는 第3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定된 것으로 본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定된 代表當事者와 被代表者間의 關係에 관하여는 民法 第688條(受任人の 費用償還請求權 등) 및 第691條(委任終了時의 緊急處理)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34條(申請의 却下) 裁定委員會는 裁定의 申請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却下한다.

第35條(審問) ① 裁定委員會는 審問의 期日을 定하여 當事者에게 의견의 陳述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當事者は 당해 審問에 參여할 수 있다.

第36條(審問의 公開) 審問은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裁定委員會가 개인의 祕密 또는 當事者の 事業上의 祕密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節次의 공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公益上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7條(事實調查 등) ① 裁定委員會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當事者 또는 參考人에게 陳述하게 하거나 鑑定人에게 鑑定하게 하는 때에는 이들에게 宣誓을

시켜야 한다.

② 當事者는 事實調查에 參여 할 수 있다.

③ 裁定委員會는 審查官에 의한 事實調查 등의 내용을 裁定의 資料로 하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當事者の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38條(會議의 非公開) 裁定委員會의 會議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公開하지 아니한다.

第39條(裁定) ① 裁定은 文書로써 行하고 裁定文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 裁定委員이 이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事件番號와 事件名

2. 當事者·代表當事者 또는 代理人의 이름과 住所

3. 主文

4. 申請의 취지

5. 이유

6. 裁定한 날짜

② 第1項 第5號의 이유에는 主文內容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程度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裁定委員會는 裁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裁定文書의 正本을 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第40條(裁定의 効力) ① 裁定委員會가 裁定을 행한 경우에 裁定文書의 正本이 當事者에게 送達된 날부터 60日 이내에 당해 裁定과 판계되는 損害賠償에 대하여 訴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訴訟이 취하된 때에는 그 損害賠償에 대하여 當事者間에 당해 裁定內容과 동일한 合意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의 취하는 被告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効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第41條(職權調停) ① 裁定委員會는 裁定申請된 事件을 調停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當事者の 同意를 얻어 職權으로 직접 調停하거나 地方環境委員會에 송부하여 調停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件을 調停에 회부한 경우 當事者間에 合意가

성립된 때에는 裁定의 申請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第42條(時效의 중단 등) 裁定의 申請은 時效의 중단 및 出訴時間의 遵守에 관하여는
裁判上의 請求로 본다.

第43條(訴訟과의 관계) ① 裁定이 申請된 事件에 대하여 訴訟이 進行중인 때에는
受訴法院은 裁定이 있을 때까지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② 裁定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節次의 중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事件의 裁定節次를 중지하여야 한다.

第44條(準用規定) 第22條의 規定은 裁定委員會가 행하는 裁定에 관하여 이를 準
用한다.

第4章 捕則

第45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
委員, 關係專門家는 刑法 第127條,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46條(關係機關에의 협조요청) 中央環境委員會 및 地方環境委員會는 環境汚染의
被害人에 관한 紛爭에 관한 調査와 알선·調停 및 裁定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에
대하여 環境汚染發生의 원인의 調査에 관한 資料의 제출, 의견의 개진, 技術的
knowledge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第47條(調整費用) 中央環境委員會 또는 地方環境委員會가 행하는 알선·調停 또는
裁定의 節次에 필요한 費用은 中央環境委員會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地
方環境委員會의 경우에는 條例로 각각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當事者가
이를 부담한다.

第48條(手數料) ① 中央環境委員會에 대하여 알선·調停 또는 裁定의 申請을 하는
者나 第17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參加와 申請을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地方環境委員會에 대하여 알선 또는 調停의 申請을 하는 者나 第17條 第1

202 附錄：環境關聯法律

項의 規定에 의한 參加의 申請을 하는 者는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手數料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收入으로 한다.

第49條(送達) 文書의 送達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中 送達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50條(處理結果의 통보) 中央環境委員會 및 地方環境委員會의 委員長은 紛爭의 評定 · 調停 또는 裁定에 관한 處理結果를 지체없이 環境處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5章 罰則

第51條(罰則)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環境委員會 및 地方環境委員會의 委員 또는 職員의 出入 · 調査 · 閲覽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52條(過怠料) 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文書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文書 또는 물건을 제출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課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處長官 및 市 · 道知事が 賦課 · 徵收한다.

③ 第2項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中央環境委員會 委員長 및 市 · 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中央環境委員會 委員長 및 市 · 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 ① (施行日) 이 법은 公布 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②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계속중인 紛爭調停 申請事件에 대한 調停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③ (다른 法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中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시행령

1991. 1. 28
대통령령 제13302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분쟁사건의 관장) 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사건을 말한다.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해당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환경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된 분쟁사건
2.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알선·조정을 신청한 분쟁사건

제 3 조(심사관의 지명 등) 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경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소속직원을 심사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처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분쟁사건마다 심사관을 지정하여 당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중앙환경위원회위원을 보좌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 4 조(전문가의 위촉)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수질·폐기물·해양·자연생태계등 해당분야별로 각각 10인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 5 조(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처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 중앙환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중앙환경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환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조(수당등) 중앙환경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참고인 출석의 요구등) ①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 문서·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일당, 감정료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증표의 제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사업장 기타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하는 중앙환경위원회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9 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대표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분쟁에 관계되는 오염발생의 장소 및 피해가 발생한 장소
4. 분쟁의 경과
5.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6. 기타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②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206 附錄：環境關聯法律

2.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3.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산출근거
4. 알선·조정의 결과

제10조(신청의 변경) ① 알선·조정위원,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쟁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①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출된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따른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서등의 이송)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그 관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해당 위원회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참가신청)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의 각하)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인이나 조정·재정에의 참가인은 당해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병합) ①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의 계류중에 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기타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의 지위
승계를 결정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절차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심사관의 출석) 중앙환경위원회의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당해 위
원회의 회의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지명등)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선·조정 또는 재정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그 명단과 분쟁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알선중단의 통지)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
정에 의하여 알선이 중단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1인의 조정위원 관장사건)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라 함은 조정을 구하는 환경오염피해청구액이 5천만원이하인
분쟁사건을 말한다.

제21조(조정안의 수락권고의 방식) ①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의

수락권고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관찰사건) 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라 함은 재정을 구하는 환경오염피해청구액이 1억원이하인 분쟁사건을 말한다.

제23조(제척·기피신청등) ①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은 중앙환경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 제1항 및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중앙환경위원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중앙환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기각 또는 인용은 중앙환경위원회의 결정으로 행하며, 이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⑤ 재정위원이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환경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신청의 각하) 중앙환경위원회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의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5조(심문기일의 통지) 중앙환경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의 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서의 작성) 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35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 또는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심문 또는 사실조사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직원이 서명捺印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심문 또는 사실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의 성명
4. 심문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5. 심문 또는 사실조사의 방법 및 내용
6. 기타 심문 또는 사실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7조(재정의 경정) 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환경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8조(재정신청된 사건의 조정회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된 사건을 지방환경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29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하는 경우 그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기록의 열람) ①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조정비용)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환경위원회가 행하는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중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환경위원회의 위원·직원·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4. 알선·조정 또는 재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또는 전신료

제32조(수수료) ① 중앙환경위원회에 대하여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을 하는

210 附錄：環境關聯法律

자 및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의 신청을 하는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일선·조정·재정 또는 참가를 신청할 때에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일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등으로 증가할 때에는 증가전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 환경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환경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징수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